8. 회비운영규정

곡성군체육회 회비운영규정

제정 2023.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곡성군체육회" (이하 '본회' 라 한다) 정관 제41조에 따른 체육회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회비납부 및 회원종목단체의 회비 납부를 통해 회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회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임원 및 본회 산하단체인 회원종목단체에게 적용된다.

제3조(회비의 구분)

본회 회비는 임원회비와 회원종목단체회비로 나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임원회비" 라 함은 본회 임원들의 연회비로써, 회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비(연 300만원)
2. 부회장 회비(연 100만원)
3. 이사 회비(연 30만원)

② "회원종목단체회비" 라 함은 회원종목단체들의 회원자격에 의한 연회비로써, 회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체육행사사업 보조금 교부 정회원단체 회비 (연 24만원)
2. 체육행사사업 보조금 미교부 정회원단체 회비 (연 10만원)

제4조(회비의 결정)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회비납부 방법) ① 회비는 완납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3월말 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경우, 위촉된 날로부터 연회비를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경우는 매년 3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전액 완납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면제)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원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1. 감사인 경우(회계감사, 행정감사)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노무사, 세무사가 임원인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제7조(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 본 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시기가 지난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한다.

①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는 회비 납부 기일을 지났을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은 자격정지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다만 ,1항에 따라 자격정지등 조치를 취했을 경우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비의 사용)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단체관계자 또는 유관 기관 업무수행 경비
2. 본회 사무국 운영 또는 사업비
3. 경조사비
4.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결정한 사항

제9조(회비 지출업무 처리) 회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문서 및 지출결의서
2. 증빙서류(영수증, 견적서 등)

제10조(회계구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 적립하여 운용한다.

제11조(결산) ① 당해 연도 회비의 집행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본회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은 곡성군체육회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곡성군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